

# 예 산 총 칙

201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22,150,999	9,664,530
일반회계	297,671,005	8,930,130
특별회계	24,479,994	734,400
기타특별회계	24,479,994	734,400
상수도사업	1,791,396	53,742
하수도사업	1,190,991	35,730
수질개선	3,604,300	108,129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47,150	13,415
의료급여기금	550,330	16,510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164,100	4,923
소득특화사업	5,681,812	170,454
농공단지조성사업	107,800	3,234
공영개발사업	117,115	3,513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825,000	324,75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사업조서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036,52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